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2.12.30)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륜자동차 제작자는 해당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의무화 등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안 제12조제4항제4호)

나. 소음정보전산망 구축·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14조제1항제3호)

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라. 자동차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 2)

○ 제작이륜차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제작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허용기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상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차목부터 러목까지를 카목에서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2호”로 하고,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기소음의 인증·변경인증 받은 결과 값 표시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	-------	-------	-------

별표 2 제2호과목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용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미만 초과한 경우		20	60	120
2) 적용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A) 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60	100	160
3) 적용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40	200
4) 적용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40	2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100	160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 (생략)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 ③ (생략) <u><신설></u>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u>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u>

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교통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6713